

주요산업별 한·미 FTA 활용 매뉴얼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둔산동 920번지)
<http://www.custo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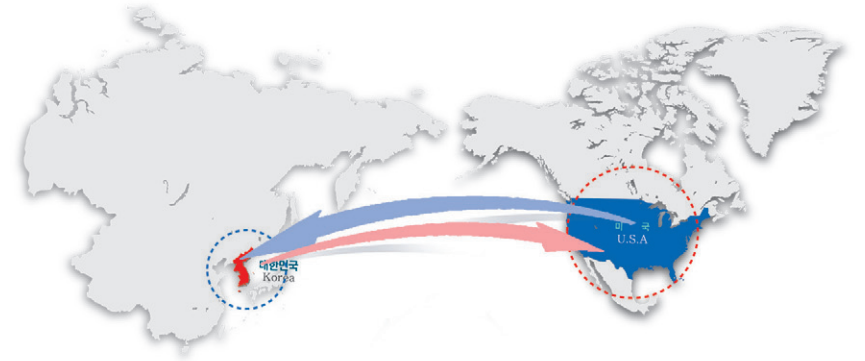


관세청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주요산업별
한·미 FTA
활용 매뉴얼



한-미 FTA 활용전 체크사항

협정발효국 확인하기

- 무역거래 협상에 앞서 **상대국이 발효국인가 파악해야 함**
- FTA 혜택은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발효국이어야 함

<Tip> 발효국 확인 : <http://fta.customs.go.kr>

품목번호(HS CODE) 확인하기

-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원산지 결정기준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FTA 활용의 기본

<Tip> 품목번호 확인은

- 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customs.go.kr>
품목분류 검색
- ② 상담을 통한 확인 : 관세청 FTA고객지원센터
(☎1577-8577)
- ③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042-930-3630)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출물품이 협정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세율이 몇 %인지 확인하여 관세혜택 정도 확인 가능

<Tip> 관세혜택(일반세율 - FTA협정세율)은

- ①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한 확인 : <http://fta.customs.go.kr>
협정세율 검색
- ※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은 원산지증명서 등 준비 불필요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함

<Tip>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은

- ①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한 확인 : <http://fta.customs.go.kr>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Tip>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 ① 발급권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발급
(별도 양식 없음)
- ②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9서식(권고서식)
- ③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4년간 유효**

관련서류 보관하기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Tip>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

- ① 서류보관 기관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②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원산지증빙자료 일체
- ③ 원산지 검증 : 일반물품(직접검증), 섬유(간접검증+공동검증)

CONTENTS

01 I. 기계류 및 전기전자 산업

- 제1장 기계류 및 전기전자 산업의 개요 / 2
- 제2장 세탁기 FTA 활용 Tip / 3
- 제3장 셋톱박스 FTA 활용 Tip / 8
- 제4장 CCTV FTA 활용 Tip / 15

23 II. 자동차 산업

- 제1장 자동차 산업 개요 / 24
- 제2장 자동차 FTA 활용 Tip / 25

37 III. 석유(화학) 산업

- 제1장 석유(화학) 산업 개요 / 38
- 제2장 석유제품 FTA 활용 Tip / 40
- 제3장 PET FTA 활용 Tip / 44

49 IV. 고무제품 산업

- 제1장 고무제품 산업 개요 / 50
- 제2장 타이어 FTA 활용 Tip / 51

59 V. 섬유 산업

- 제1장 섬유·의류 산업 개요 / 60
- 제2장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 특징 / 61
- 제3장 면직물 FTA 활용 Tip / 63



01.

기계류 및 전기전자산업

- 제1장 기계류 및 전기전자 산업의 개요
- 제2장 세탁기 FTA 활용 Tip
- 제3장 셋톱박스 FTA 활용 Tip
- 제4장 CCTV FTA 활용 Tip

I 기계류 및 전기전자 산업

기계류 및 전기전자 산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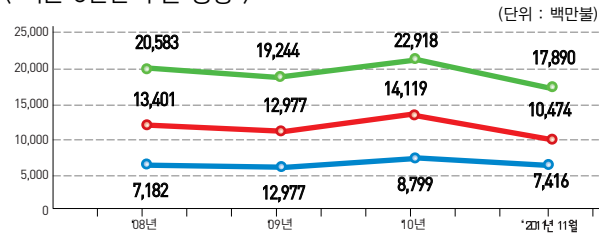
● 개요

기계류 및 전기전자산업은 크게 기계류와 컴퓨터 및 그 부분품과 전자제품 (PC, 영상 및 음향기기 등)과 전기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산업
 → 對美 전체 수출 규모 * 中 44.6%(22,198백만불, 2010년)

對美 수출(금액) : ('09) 37,649백만불, ('10) 49,816백만불

● 對美 수출 동향

〈 최근 3년간 수출 동향 〉



〈 주요 수출품목 한·미 FTA 효과 〉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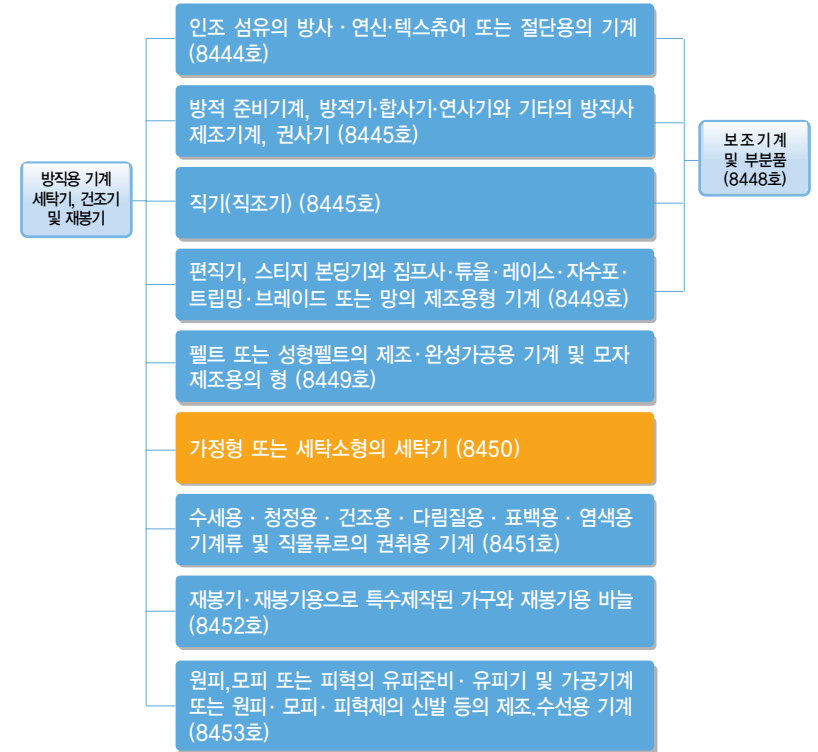
품명	수출금액 (2010)	실행세율 (%)	협정세율 (%)	철폐시기	FTA효과 (연간)
세탁기	721	14/26	1/0	10년 / 즉시	9
셋톱박스*등	562	0~3	0	3년 / 즉시	8
CCTV 등	849	0~5	0	10년 / 즉시	21

* 셋톱박스

- 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전달되는 압축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TV등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장치

세탁기 FTA 활용 Tip

● 세탁기의 품목분류



● 세탁기 구조

가. 전동기 / 기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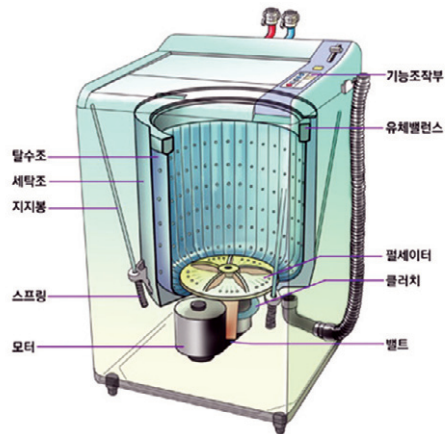
세탁과정에서 세탁조 아래의 날개(펠세이터)를 좌우로 회전시켜 강한 물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함.
탈수과정에서 탈수조를 고속회전시키는 역할을 함.

나. 급수장치

빨래의 양을 감지하여 전자석으로 된 급수밸브에 전원이 들어오고 전자석을 당기면 물을 막고 있던 판이 당겨서 물이 들어옴.

다. 배수장치

빨래가 끝나면 배수모터가 작동하여 물을 밖으로 내보냄.



● 주요 원재료 및 품목번호

〈 세탁기 완제품 〉

구분	품명 및 HS 품목 번호			
세탁기	10kg 이하	완전자동세탁기	보통 세탁기 드럼 세탁기	8450.11-1000
		기타 세탁기	원심탈수기 내장	8450.12-0000
			기타	8450.19-0000
	10kg 초과			8450.20-0000

〈 세탁기의 주요 부품 〉

세탁기	세탁기 모터	세탁기 부분품
	8501.31	8450.90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품명	MFN	협정세율	
완전자동 세탁기 (HS code: 8450.11)	1.4	2011 : 1.3 2012 : 1.1 2013 : 1 2014 : 0.8 2015 : 0.7	2016 : 0.6 2017 : 0.4 2018 : 0.3 2019 : 0.1 2020 : 0
기타 세탁기 (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 (HS code: 8450.12)	2.6	즉시철폐	
기타 (HS code: 8450.19)	1.8	즉시철폐	
10kg 초과 세탁기 (HS code: 8450.20)	1	2011 : 0.9 2012 : 0.8 2013 : 0.7 2014 : 0.6 2015 : 0.5	2016 : 0.4 2017 : 0.3 2018 : 0.2 2019 : 0.1 2020 : 0
부분품 (HS code: 8450.90)	2.6	2011 : 2.34 2012 : 2.08 2013 : 1.82 2014 : 1.56 2015 : 1.3	2016 : 1.04 2017 : 0.78 2018 : 0.52 2019 : 0.26 2020 : 0

● 세탁기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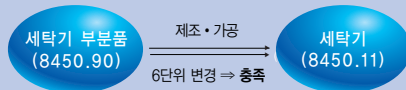
구 분	원산지 결정기준
10kg 이하 세탁기 (8450.11-00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0kg 이하 세탁기-기타세탁기 (8450.12-00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0kg 초과 세탁기 (8450.12-00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세탁기 모터 (8501.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세탁기 부분품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세번변경기준 :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최종 생산물품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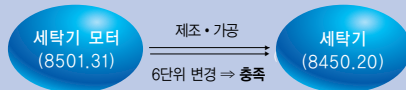
- 세탁기 완제품 (8450.11/12/20)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세탁기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6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세탁기 모터(85601.31), 세탁기 부분품(845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세탁기 모터(8501)에서 세탁기(8450)로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

- 한-미FTA에서 세탁기(8450.11) 원산지 결정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세탁기(8450.11) 원재료 구성내역**

구 분	품 목	품목번호	원산지구분	세번변경여부
재료 구성 내역	세탁기 모터	8501.30-1010	역내산	
	세탁기 부분품	8450.90-0000	역외산	변경

해설

- 원산지기준으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만을 두고 있음
 - 원산지결정을 위해 세탁기 **구성 원재료의 세번을 파악**한 후,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가를 판단
 -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단과정
 - 원재료의 세번 확인 → 완제품의 세번 확인
 - *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는 검토 不要
- ⇒ 사용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세탁기 부분품)의 세번이 완제품인 세탁기(8450.11)의 세번이 다르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요건 **충족**으로 **역내산 인정**

셋톱박스 FTA 활용 Tip

셋톱박스의 품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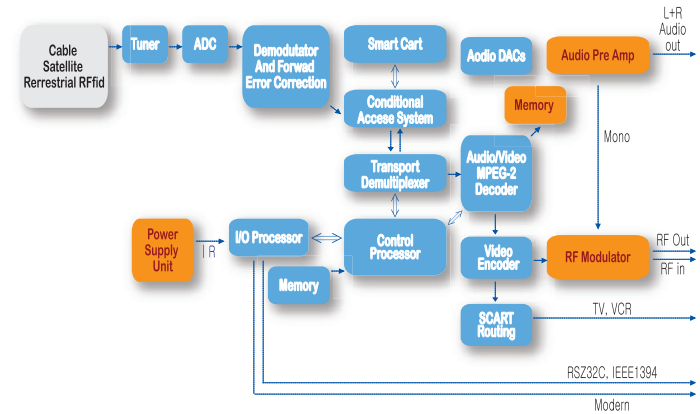


셋톱박스의 구조

셋톱박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MPEG2방식으로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정보를 재생하는 것임.

디지털 셋톱박스는 기본적으로 Front-end (Tuner & Demodulator)와 Back-end (MPEG-2 decoder chip, De-multiplexer, graphic, Audio, Data processor), 외부 인터페이스로 구성.

〈 셋톱박스의 기본구조 〉



Tuner & Demodulator

각 매체별로 입력되는 신호를 선국된 채널에 따라 수신하고 채널 디코딩을 수행

CAS system or Cable

유료 방송에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암호화된 디지털 스트림을 시청 가능한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

De-Multiplexor

Demoludator 또는 CAS에서 보내진 신호의 경우 여러가지 신호가 섞여 있는데 이를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로 재정렬하는 역할

Video Decoder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디스플레이 가능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

Audio Decoder

디지털 오디오 스트림을 아날로그 오디오 또는 SPDIF와 같은 포맷으로 변환하여 출력

CPU

전체적인 시스템의 활동을 통제하고 관찰.

이더넷 또는 모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 셋톱박스의 주요 원재료 및 품목번호

〈 완제품 〉

구 분	품목번호(HS code)		
비디오 튜너	8528.71-1010 (천연색의 것)		
	8528.71-1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디지털방송 수신기	Sep-top box (셋톱박스)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것	8528.71-2010
		기타	8528.71-2090

〈 주요 원재료 〉

품 명	품목번호(HS code)	
Tuner	칼라	8529.90-9610
	단색 또는 흑백	8529.90-9620
SMPS(전원공급장치)	-	8504.40-0000
IC	CPU	8542.31-1000
	SDRAM	8542.32-1010
	Flush memory	8542.32-1030
	C-MOS-IC	8542.39-1000
PCB	메인보드	8529.90-9649
	기타·PCB	8529.90-9049
컨넥터	-	8536.69-9000
케이블(PCA)	R/W/Y	8544.42-2090
Remocon	-	8543.70-9090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품 명	MFN	협정세율
셋톱박스 (8528.71-2010, 2090) 비디오튜너 (8528.71-1010, 1020)	〈8528.1204〉 0	무관세 지속
TUNER (8529.90-9610)	〈8529.9097〉 3.2	2010 : 2.1 2011 : 1.1 2012 : 0
튜너(단색 또는 흑백) (HS code: 8529.90-9620) PCB 메인보드 (HS code: 8529.90-9649)	〈8529.9001〉 3	2010 : 2 2011 : 1 2012 : 0
SMPS(전원공급장치) (HS code: 8504.40-)	〈8504.4040〉 1.5	즉시 철폐
IC CPU (HS code: 8542.31-1000)	〈8542.2140〉 0	무관세 지속
C SDRAM (HS code: 8542.32-1010) IC Flash memory (HS code: 8542.32-1030)	〈8542.2900〉 0	무관세 지속
IC C-MOS-IC (HS code: 8542.39-1000)r	〈8542.9000〉 0	무관세 지속
컨넥터 (HS code: 8536.69-9000)	〈8536.6940〉 0	무관세 지속
케이블(RCA) R/W (HS code: 8544.42-2090)	〈8544.4140〉 0	무관세 지속
Remocon (HS code: 8543.70-9090)	〈8543.4000〉 2.6	즉시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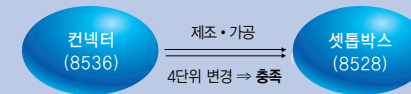
● 셋톱박스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셋톱박스 (8528.71-2010, 2020) 비디오튜너 (8528.71-1010, 1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PU 8542.31-1000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 제8541호부터 제8542호까지의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다이스 또는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직접법 30퍼센트이상, 또는 2. 공제법 35퍼센트이상
TUNER (8529.90-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직접법 35퍼센트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이상
PCB 메인보드 (8529.90-9649)	다른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9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 또는 제8529.90호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직접법 35퍼센트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이상
컨넥터 (8536.69-90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IC SDRAM (8542.32-1010) C-MOS-IC (8542.39-1000)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 제8541호부터 제8542호까지의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다이스 또는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직접법 30퍼센트이상, 또는 2. 공제법 35퍼센트이상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케이블 (8544.42-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Remocon (8543.70-9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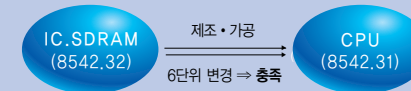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 셋톱박스(8528.7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PU(8542.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택일

* 6단위 세번변경



* 부가가치 기준(직접법 35%이상, 또는 공제법 45%이상)

공제법(Build-down Metho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직접법(Build-up Method) 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

- 한-미FTA에서 셋톱박스(8528.71) 원산지결정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셋톱박스(8528.71) 원재료 구성내역

구 분	품 목	품목번호	원산지구분	세번변경여부
재료 구성 내역	CPU	8542.31-1000	역내산	
	DDR2 SDRAM	8542.32-1010	역외산	변경
	PCB	8529.90-9649	역내산	
	TUNER	8529.90-9610	역외산	변경
	REMOCON	8543.70-9090	역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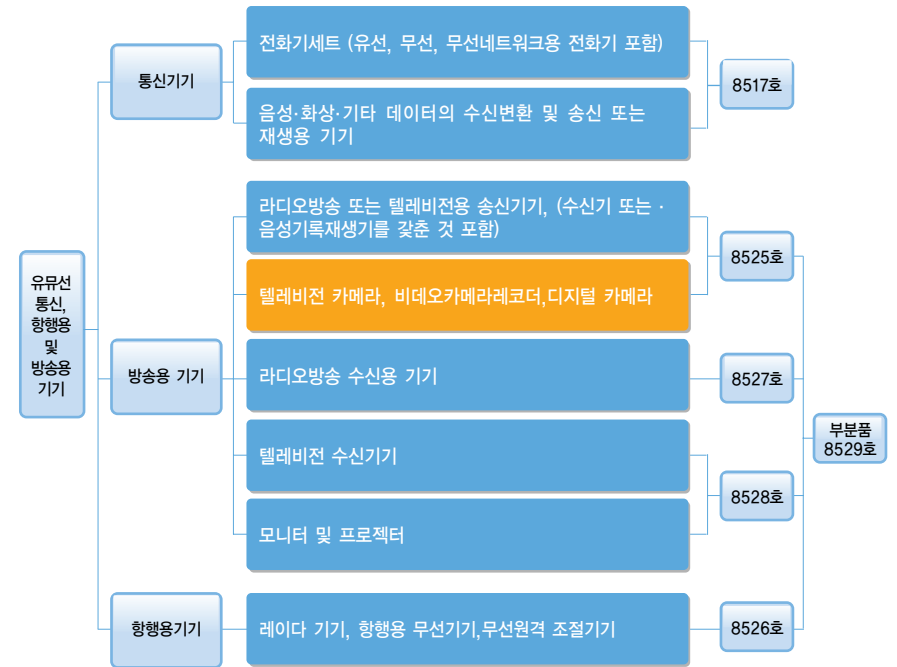
해설

- 원산지기준으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만을 두고 있음
- 원산지결정을 위해 셋톱박스 구성 원재료의 세번을 파악한 후, 셋톱박스 제조로 인해 6단위의 세 번이 변경되는가를 판단
-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단과정
 - 원재료의 세번 확인 → 완제품의 세번 확인
 - *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는 검토不要
- ⇒ 사용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DDR2 SDRAM, TUNER)의 세번이 완제품인 셋톱박스(8528.71)의 세 번이 다르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요건 충족으로 역내산 인정

제4장 CCTV FTA 활용 Tip

◎ CCTV의 품목분류

CCTV는 HS 8525호의 품목 중 텔레비전 카메라(8525.80)에 분류



◎ CCTV 시스템의 구조

CCTV시스템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촬상계(카메라), 촬영된 영상정보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전송계(케이블), 전송받은 영상신호를 재생 표시하는 수상계(디스플레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촬영계

촬영계는 렌즈, 필터 등으로 구성. 카메라의 고정을 위한 설치 브래킷, 하우징 등이 필요하며, 카메라를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격 제어시스템이 포함됨

전송계

촬영된 화상을 이용할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것으로 유선전송과 무선전송으로 나누어짐. 통상적으로 유선에 의한 것이 많으며 무선의 것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함

수상계

전송받은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재생하는 부분. 시스템과 연계하여 화상의 가공, 기록, 재생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화상처리계와 함께 사용됨

〈 CCTV 시스템의 구조 〉



◎ CCTV의 주요 부품 및 품목번호

〈 CCTV System의 구성 〉

구 분	구성부품	HS code
카메라	돔형 카메라	8525.80-1020 8525.80-1090
	박스형(고정) 카메라(CCTV)	
	적외선 카메라	
녹화기 (DVR)	일반 DVR	8521.90-1000 (hard disk type)
	DV형 DVR	
	DVR 보드 (PC 장착)	
모니터	CRT	8528.49-1090
	LCD	8528.59-2090

〈 CCTV(박스형 카메라)의 주요 구성부품 〉

품 명	주요구성부품	HS code
비디오 카메라 (고정 카메라)	렌즈	9002.11-9010
	고정렌즈 전동줌렌즈	
	CCD (이미지 센서) CMOS 모듈 (이미지 센서 모듈)	8541.40-9030 8529.90-9500
	ISP (Image Signal Processor,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8542.31-2000
녹화기 (DVR)	메인보드	8522.90-1020
	하드디스크 (고용량)	8471.70-2020
	AV Processor (Audio-Video-Processor)	8542.31-3000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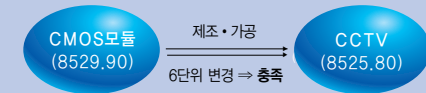
구 분	MFN
카메라- 동형 카메라, 박스형 (고정)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HS code: 8525.80-1020, 8525.80-1090)	<8525.30> 0
녹화기 (DVR)- 일반 DVR, DV형 DVR, DVR 보드 (PC 장착) (HS code: 8521.90-1000) (Hard disk type)	<8521.9000> 0
모니터- CRT (HS code: 8528.49-1090)	<8528.22> 5
모니터- LCD (HS code: 8528.59-2090))	<8528.21> 0
비디오 카메라 (고정 카메라)- 렌즈- 고정렌즈, 전동줌렌즈 (HS code: 9002.11-9010)	<9002.1190> 2,3
비디오 카메라 (고정 카메라)- CCD (이미지 센서) (HS code: 8541.40-9030)	<8541.40> 0
비디오 카메라 (고정 카메라)- CMOS 모듈 (이미지 센서 모듈) (HS code: 8529.90-9500)	<8529.9095> 3.2
비디오 카메라 (고정 카메라)- ISP (Image Signal Processor,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HS code: 8542.31-2000)	<8542.21> 0
녹화기 (DVR)- 메인보드 (HS code: 8522.90-1020)	<8522.90> 0
녹화기 (DVR)- 하드디스크 (고용량) (HS code: 8471.70-2020)	<8471.7020> 0
녹화기 (DVR)- AV Processor (Audio-Video-Processor) (HS code: 8542.31-3000)	<8548.90> 0

● CCTV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구 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CCTV (852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녹화기 (DVR)- 일반 DVR, DV형 DVR, DVR 보드 (PC 장착) (HS code: 8521.90-1000) (Hard disk type)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모니터- LCD (HS code: 8528.59-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비디오 카메라 (고정 카메라)- CMOS 모듈 (이미지 센서 모듈) (HS code: 8529.90-9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직접법 35%이상 또는 공제법 45%이상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 CCTV(8525.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역외산 재료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6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CMOS모듈(852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택일

* 공제법(Build-down Metho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 직접법(Build-up Method) 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

- 한-미 FTA에서 CCTV(8525.80) 원산지결정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TV(8525.80) 원재료 구성내역

구 분	품 목	품목번호	원산지구분	세번변경여부
재료 구성 내역	CMOS	5829.90-9500	역내산	
	렌즈	8542.32-1010	역외산	변경
	CCD	8529.90-9649	역외산	변경
	ISP	8529.90-9610	역외산	변경

해설

- 원산지기준으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만을 두고 있음
- 원산지결정을 위해 CCTV 구성 원재료의 세번을 파악한 후, 6단위의 세번이 변경되는가를 판단
-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단과정
 - 원재료의 세번 확인 → 완제품의 세번 확인
 - *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는 검토 不要
- ⇒ 사용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렌즈, CCD, ISP)의 세번이 완제품인 CCTV(8525.80)의 세번이 다르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요건 충족으로 역내산 인정

02.

저동차 산업

- 제1장 저동차 산업 개요
- 제2장 저동차 FTA 활용 Tip



2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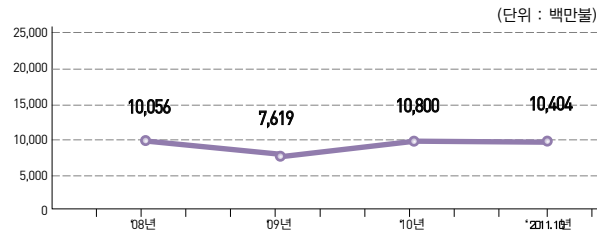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분류되며,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도 약 2만 5천여개가 투입되어, 자동차 수출증가에 따른 해외 부품 시장 확대에 산업연관 효과가 큰 산업임

→ 對美 전체 수출 규모 * 中 21.7%(10,800백만불, 2010년)

對美 수출(금액) : ('09) 37,649백만불, ('10) 49,816백만불

○ 對美 수출 동향

〈 최근 3년간 수출 〉



〈 주요 수출품목의 한-미 FTA 효과 〉

(단위 : 백만불)

품명	수출금액 (2010)	실행세율 (%)	협정세율 (%)	철폐시기	FTA효과 (연간)
자동차	10,800	2.5~25	0	5년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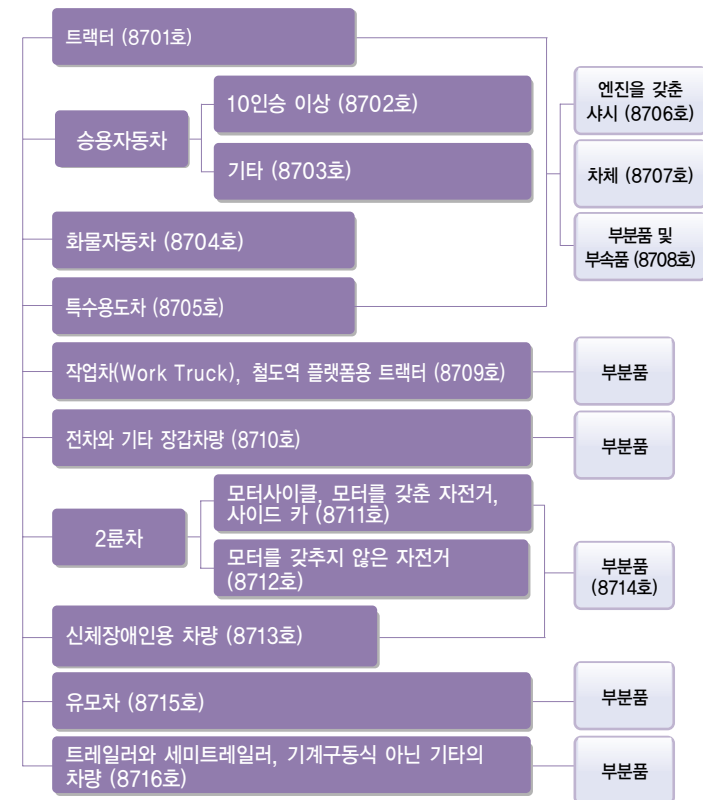
※ 특이사항

- 對美 자동차 수출의 70%를 상회하는 3,000CC이하 승용자동차(2.5%)는 추가 협상에서 발효후 4년간 유지후 철폐, 모터사이클·동차 부품(2.5%) 등은 관세즉시 철폐, 전기자동차는 4년 균등 철폐로 결정
- 다만, 화물자동차(25%)의 경우 9년간 균등철폐 일정을 당초 한·미 FTA일정대로 유지하되, 발효 7년 경과후(2019.1.1)부터 균등 철폐

자동차 FTA 활용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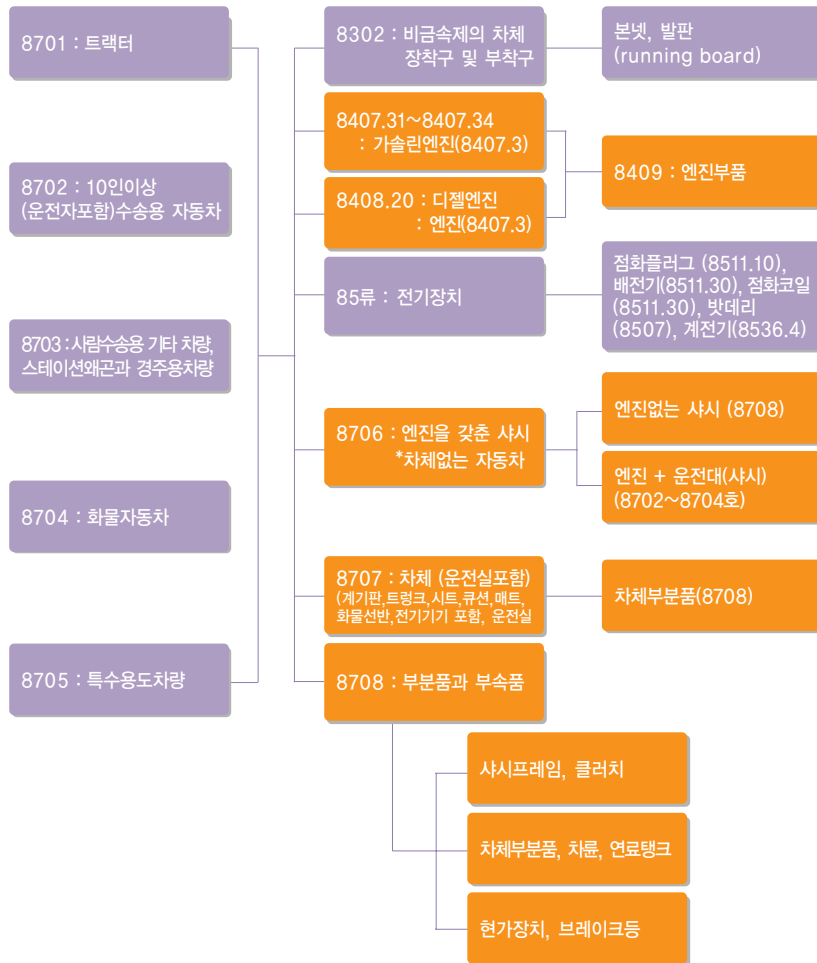
○ 자동차의 품목분류

〈 자동차의 품목분류 〉





< 자동차 품목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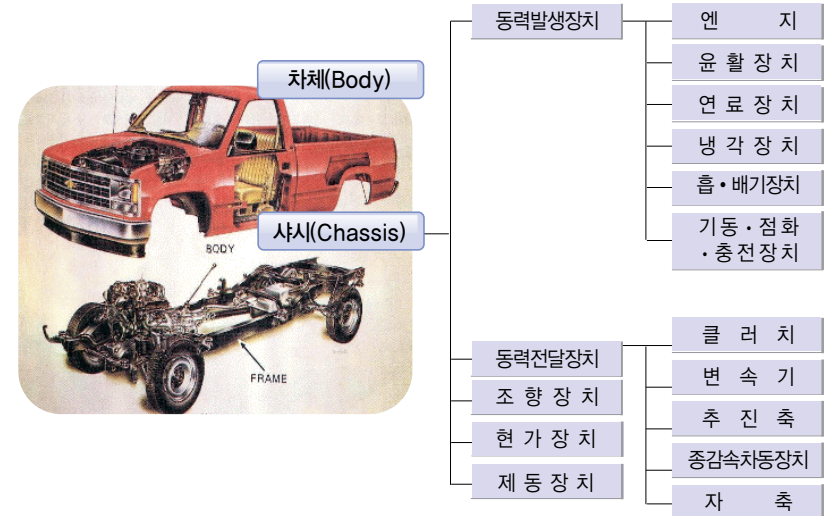
※ 자동차에서 역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미 TA에서 정하는 자동차 상품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동차 구조

자동차는 크게

- 차체(Body)와 샤시(chassis)로 구분
- 샤시(Chassis)에는 프레임(frame), 기관(엔진), 동력전달장치(클러치 · 변속기 · 추진축 · 종감속기어 · 차축 등),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 자동차 구조 >



◎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품목번호

구분		품목번호(HS code)
트랙터	보행운전형트랙터	8701.10
	도로주행식트랙터	8701.20
	무한궤도식 트랙터	8701.30
	기타	8701.90



품 명		품목번호(HS code)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8702.10
	기타	8702.90
승용자동차	설상주행용 차량 등	8703.10
	1,000CC이하 것	8703.21
	1,000~1,500CC이하 것	8703.22
	1,500~3,000CC이하 것	8703.23
	3,000CC 초과인 것	703.248
	기타(1,500CC이하)	8703.31
	기타(1,500~2,500CC이하)	8703.32
	기타(2,500CC초과)	8703.33
화물자동차	기타	8703.90
	덤프차(비고속도로용)	8704.10
	5톤이하	8704.21
	5톤 초과 20톤 이하	8704.22
	20톤 초과	8704.23
	기타(5톤이하)	8704.31
특수용도차량	기타(5톤초과)	8704.32
	기타	8704.90
	기중기차	8705.1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705.20
	소방차	8705.30
엔진을 갖춘 사시	콘크리트 운반차	8705.40
	기타	8705.90
	제8701호~제8705호의 자동차에 한함	8707.10
	제8703호의 차량의 것	8701.10
차체	기타	8707.9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10
부분품과 부속품	안전벨트	8708.21
	기타	8708.29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708.4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8708.50
	로드휠 및 그부분품과 부속품	8708.7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8708.8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91
	소음기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708.92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93
	운전대 및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8708.94
	팽창시스템을 갖춘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
	기타	8708.99

품 명		품목번호(HS code)
기타 트랙터	전기식의 것	8709.11
	기타	8709.19
	부분품	8709.90
전차와 기타 장갑차	전차, 장갑차, 그 부분품	8711.10
모터사이클	500CC이하	8703.22
	50~250CC이하	8711.20
	250~500CC이하	8711.30
	500~800CC이하	8711.40
	800CC초과	8711.50
자전거	기타	8711.9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것	8712.00
장애인용 차량	기계 구동식이 아닌 것	8713.10
	기타	8713.20
부분품과 부속품	안장	8714.11
	기타	8714.19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8714.20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714.91
	휠 림과 스포크	8714.92
	허브 및 프리 휠스프로켓	8714.93
	브레이크 및 그 부분품	8714.94
	안장	8714.95
	기타	8714.99
	기타	8705.9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5.00	
트레일러 등	주거 및 캠핑용	8716.10
	농업용 자동적재식 또는 양하식	8716.20
	탱커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8716.31
	기타	8716.40
	기타의 차량	8716.80
가솔린 엔진	부분품	8708.30
	500CC이하인 것	8407.31
	50~250CC이하인 것	8407.32
	250~1,000CC이하인 것	8407.33
디젤엔진	1,000CC 초과인 것	8407.34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8408.20
가솔린 엔진	제87류 차량용의 것	8409.91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품 명	MFN	협정세율
트랙터 (HS code: 8701.10/30/90호)	<8701.1000> 0 <8701.2000> 4	무관세 지속 발효후 3단계 균등 철폐(3년)
10인 이상 승용자동차 (HS code: 8702.10/90호)	2	발효후 3단계 균등 철폐(3년)
승용자동차 (HS code: 8703.10/21/22/23/24/31/32/33호)	2.5	발효후 4년 유지후 철폐
승용자동차(전기) (HS code:8703.90)	2.5	발효후 4년균등 철폐
화물자동차 (HS code: 8704.10호)	<8704.1010/1050> 0	무관세 지속
화물자동차(5톤이하) (HS code: 8704.21호)	<8704.2100> 25	발효후 10단계 균등 철폐(10년)
화물자동차(5톤이상~20톤이하) (HS code: 8704.22호)	<8704.2210> 4 <8704.2250> 25	<8704.2210> 즉시철폐 <8704.2250> 발효후 10단계 균등 철폐(10년)
화물자동차(20톤초과) (HS code: 8704.23호)	<8704.2300> 25	발효후 10단계 균등 철폐(10년)
화물자동차(5톤이하) (HS code: 8704.31호)	<8704.3200> 25	발효후 10단계 균등 철폐(10년)
기타 화물자동차 (HS code: 8704.90호)	<8704.9000> 25	발효후 10단계 균등 철폐(10년)
특수용도차량 (HS code : 8705.10~90)	0	무관세
엔진을 갖춘 샤시 (HS code : 8706.00)	<8706.0003/05> 4 <8706.0015> 2.5 <8706.0025> 1.6 <8706.0030> 0 <8706.0050> 1.4	발효 후 3단계 균등 철폐(3년)

품 명	MFN	협정세율
차체 (HS code: 8707.10호)	2.5	즉시철폐
부분품과 부속품 (HS code: 8708)	2.5	즉시철폐
가솔린엔진(50cc이하) (HS code: 8407.31)	0	무관세 지속
가솔린엔진(50초과~250이하) (HS code: 8407.32)	0	무관세 지속
가솔린엔진(250초과~1000이하) (HS code: 8407.33)	<8407.3310> 0	무관세 지속
	<8407.3330> 0	무관세 지속
	<8407.3360> 2.5	즉시철폐
	<8407.3390> 0	무관세 지속
가솔린 엔진(1000초과) (HS code: 8407.34)	<8407.3405> 0	무관세 지속
	<8407.3414> 2.5	즉시철폐
	<8407.3418> 2.5	즉시철폐
	<8407.3425> 0	무관세 지속
	<8407.3435> 0	무관세 지속
	<8407.3444> 2.5	즉시철폐
	<8407.3448> 2.5	즉시철폐
	<8407.3455> 0	무관세 지속
	<8408.2010> 0	무관세 지속
	차량추진용 엔진 (HS code: 8408.20)	<8408.2020> 2.5
<8408.2090> 2.5		즉시 철폐



품 명	MFN	협정세율
기타 엔진 (HS code: 8408.90)	0	무관세 지속
부분품 (HS code: 8409.91)	<8409.9110> 0	무관세 지속
	<8409.9130> 2,5	즉시 철폐
	<8409.9150> 2,5	즉시 철폐
	<8409.9199> 2,5	즉시 철폐
기타 부분품 (HS code: 8409.99)	<8409.9910> 0	무관세 지속
	<8409.9991> 2,5	즉시철폐
	<8409.9992> 2,5	즉시철폐
	<8409.9999> 0	무관세 지속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8709.11-87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제8709.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직접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710	다른 호의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1-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제871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714.11-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제8714.99호 또는 다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직접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6.10-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제8716.90호 또는 다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자동차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8701-8706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7	다른 호의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8716.90	다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7.31-8407.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제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제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09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 직접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제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 자동차(8701~8706) : 부가가치 기준

- 아래의 3가지 중 한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 공제법(Build-down Metho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 직접법(Build-up Method) 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 순원가법(NC) : 상품의 순원가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순원가는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

- 한-미 FTA에서 자동차 엔진(8407.34) 원산지결정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직접법 35%이상 OR 순원가법 35%이상 OR 공제법 55%이상)

• 자동차 엔진(8407.34) 원재료 구성내역

구 분	품 명	원산지	품목번호	가격(원)
재료비	실린더 라이너	일본	8409.91	12,000
	흡배기밸브	독일	8409 또는 8481	20,000
	가스켓	독일	8484.10	8,000
	실린더 블록	미국	8409.91	30,000
	피스톤	독일	8409.91	10,000
	기타의 부품	한국		10,000
	소계			90,000
직접 노무비 및 경비				12,000
기간비용				20,000
공제비용(마케팅비, 판매촉진비, 로열티 등)				20,000
총 원가				142,000

해 설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엔진제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가스켓, 피스톤)의 세번이 완제품인 엔진(8407.34)의 세번과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 역내산 인정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① 직접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 ⇒ 35% 이상으로 역내산 인정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40,000^*}{142,000} \times 100 = 35.2$$

* 원산지 재료비(40,000) : 한-미 FTA 누적규정에 의거 실린더 블록(미국) + 기타 부품(한국)

- ② 공제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 ⇒ 55%이상으로 역내산 인정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142,000 - 50,000}{142,000} \times 100 = 64.79$$

- ③ 순원가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 ⇒ 35%이상으로 역내산 인정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122,000 - 50,000}{122,000} \times 100 = 59.02$$

* 순원가(122,000) = 총비용(142,000) - 공제비용(20,000)

03.

식유(회학) 신업

- 제1장 식유(회학)신업 개요
- 제2장 식유제품 FTA 활용 Tip
- 제3장 PET FTA 활용 Tip

3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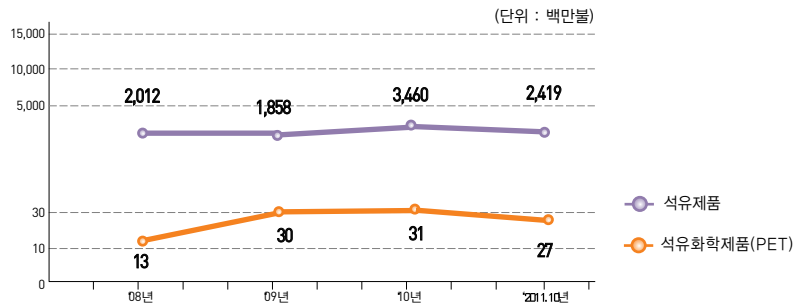
● 개요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제품(나프타)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PE, PP, PET), 합성고무(SBR),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등) 원료 등을 생산하는 산업
→ 對美 전체 수출 규모 * 中 7.0%(3,491백만불, 2010년)

對美 수출(금액) : ('09) 37,649백만불, ('10) 49,816백만불

● 對美 수출 동향

〈 최근 3년간 수출 〉



〈 한-미 FTA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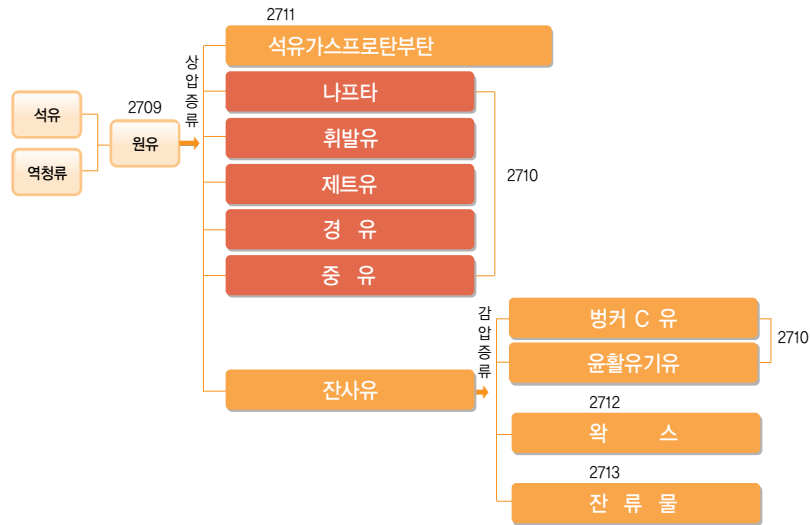
품명	수출금액 (2010)	실행세율 (%)	협정세율 (%)	철폐시기	FTA효과 (연간)
석유제품	3,460	52.5센트/bbl	0	즉시철폐	16
석유화학제품(PET)	31	6.5	0	10년균등	1

〈 석유(화학) 수요산업의 생산계통도 〉



석유제품 FTA 활용 Tip

● 석유제품의 품목분류



● 석유제품의 주요 생산공정

가스회수공정(GCU, Gas Concentration Unit)

상압증류공정 및 접촉개질공정(Platforming Unit)에서 생성된 프로판부탄 혼합가스로부터 90~95% 이상의 순수한 프로판과 부탄을 분리 회수하는 공정

침탈황공정(Hydrodesulfurization Unit)

상압증류공정에서 생성된 조나프타(Raw Naphtha), 조등유(Raw Kerosene), 경질가스유(LGO)를 촉매하에서 수소를 첨가, 반응시킴으로써 유황분을 비롯한 질소 및 금속 유기화합물 등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고 품질을 개선시키는 공정

접촉개질공정(Platforming Unit)

저옥탄가의 나프타를 백금계 촉매하에서 수소를 첨가, 반응시킴으로써 휘발유의 주성분인 고옥탄가의 접촉개질유(Reformate)를 생산하는 공정

감압증류공정(VDU, Vacuum Distillation Unit)

열분해 방지를¹⁾ 위해 증류탑의 압력을 감압상태로 하여 유분의 비점을 저하시켜 증류시키는 것

● 주요 석유제품 및 품목번호

구분	석유제품명	HS code
경질유	자동차 휘발유	710.11-10002
	항공 휘발유	710.11-20002
중질유	나프타	2710.11-4000
	등유	2710.19-2010
	경유	2710.19-3000
운할유	중유	2710.19-4000
	운할유 기유	2710.19-5020
	항공기엔진오일	2710.19-7110
	자동차엔진오일	2710.19-7120
	선박용엔진오일	2710.19-7130
	냉동기 오일	2710.19-7250
	자동차변속기오일	2710.19-7330
	유압브레이크유	2710.19-7450
	프로세스 유	2710.19-7510
전기 절연유	2710.19-7520	
그리스	0	2710.19-8000

각주 : 1) 위해 증류탑의 압력을 감압상태로 하여 유분의 비점을 저하시켜 증류시키는 것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구분	MFN	협정세율
자동차 휘발유 (HS code: 2710.11-1000)	<2710.11-15> 52.5 센트/BBL	즉시철폐
항공 휘발유 (HS code: 2710.11-2000)	<2710.11-18> 52.5 센트/BBL <2710.11-25/45> 10.5센트/BBL	즉시철폐
나프타 (HS code: 2710.11-4000)	<2710.11-25> 10.5 센트/BBL	즉시철폐
등유 (HS code: 2710.19-2010)	<2710.19-15/21/22> 52.5 센트/BBL <2710.19-23> 10.5 센트/BBL	즉시철폐
경유 (HS code: 2710.19-3000)	10.5센트/BBL	즉시철폐
윤활유 기유 (HS code: 2710.19-5020)	<2710.19-30> 84 센트/BBL <2710.19-35> 5.8 <2710.19-40> 1.3센트/KG+5.7	즉시철폐
항공기엔진오일 (HS code: 2710.19-7110)	84 센트/BBL	즉시철폐
자동차엔진오일 (HS code: 2710.19-7120)	84 센트/BBL	즉시철폐
선박용엔진오일 (HS code: 2710.19-7130)	84 센트/BBL	즉시철폐
냉동기오일 (HS code: 2710.19-7250)	84 센트/BBL	즉시철폐
유압브레이크유 (HS code: 2710.19-7450)	84 센트/BBL	즉시철폐
전기절연유 (HS code: 2710.19-7520)	10.5 센트/BBL	즉시철폐
그리스 (HS code: 2710.19-8090)	5.8	즉시철폐

● 석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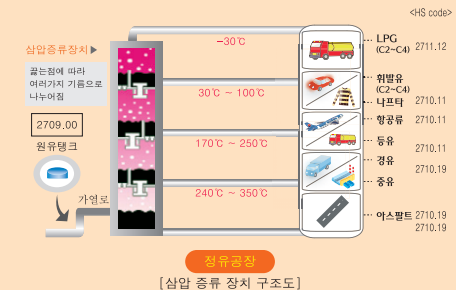
품명	원산지 결정기준
경질석유 및 조제품 (2710.11) 자동차 휘발유 (2710.11.1000) 항공 휘발유 (2710.11.2000) 나프타 (2710.11.4000)	제2710호의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공정을 통해 변경된 상품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기타 (2710.19) 등유, 경유 등	제2710호의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공정을 통해 변경된 상품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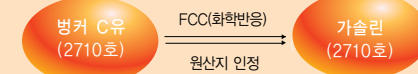
● 경질석유 및 조제품(2710.11)/ ② 기타(2710.19)

- 가공 공정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중 택일

* 가공공정기준 :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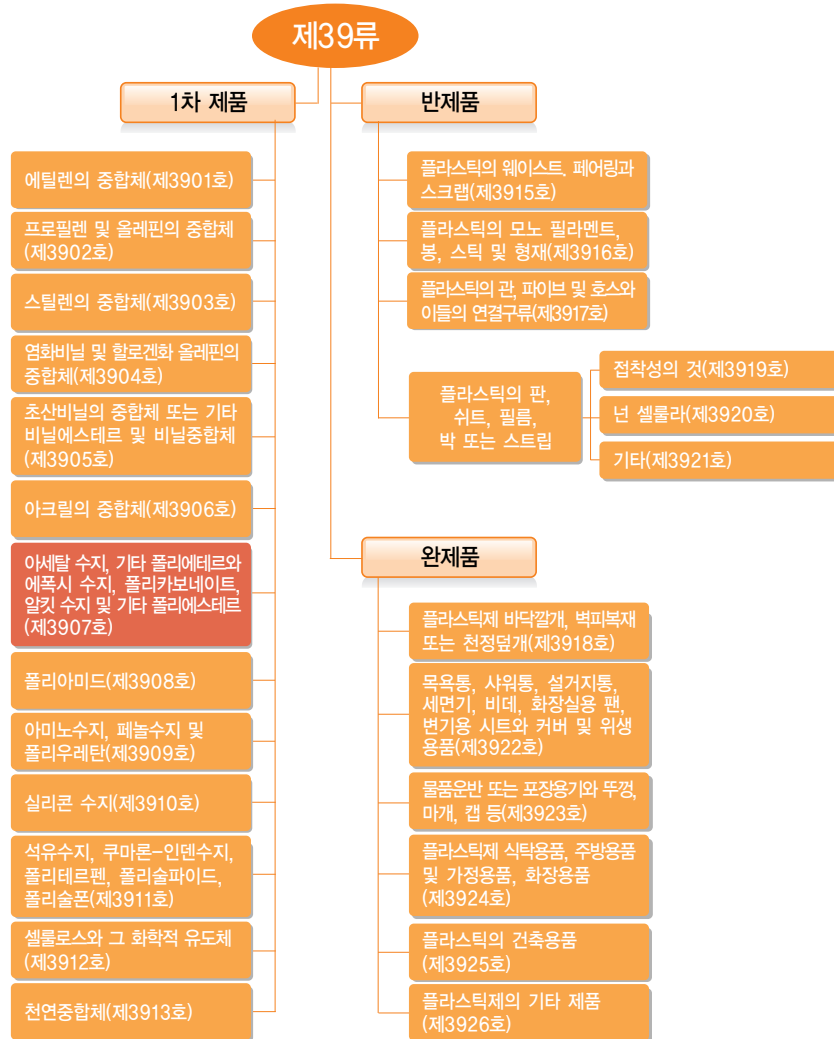


▷ 화학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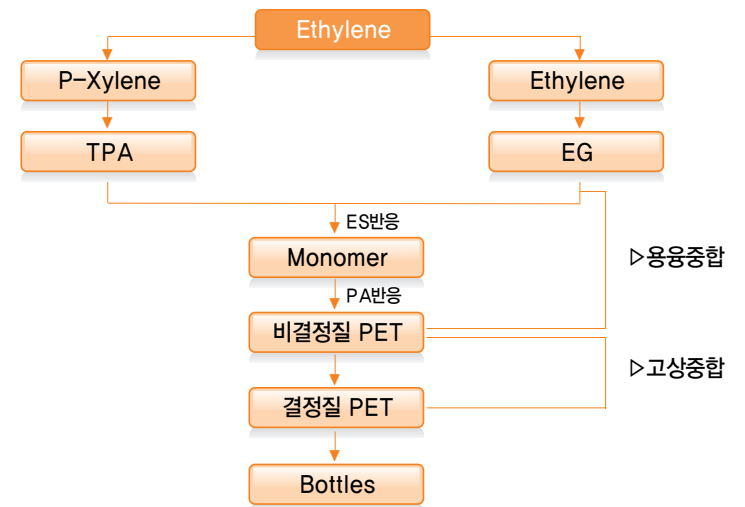
⇒ ⇒ ⇒ PET 사례 FTA

◎ PET의 품목분류



◎ PET의 생산공정

테레프탈산 (TPA)과 에틸렌글리콜 (EG)를 반응시켜 테레프탈레이트를 얻고 이것을 가열하면 축중합이 이루어지면서 에틸렌글리콜을 내보내며 PET가 얻어짐



◎ PET의 주요 원재료 및 품목번호

제 품	원 료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0000	Terephthalic acid	2917.36-1000
	Dimethyltere phthalate	2917.37-0000
	Ethylene glycol	2905.31-0000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품 명	MFN	협정세율
PET (HS code: 3907.60-0000)	6.5	발효 1년 : 5.9 발효 2년 : 5.2 발효 3년 : 4.6 발효 4년 : 3.9 발효 5년 : 3.2 발효 6년 : 2.6 발효 7년 : 2 발효 8년 : 1.3 발효 9년 : 0.6 발효 10년 : 0
테레프탈산 (HS code: 2917.36-1000)	6.5	발효 1년 : 5.9 발효 2년 : 5.2 발효 3년 : 4.6 발효 4년 : 3.9 발효 5년 : 3.2 발효 6년 : 2.6 발효 7년 : 2 발효 8년 : 1.3 발효 9년 : 0.6
테레프탈산디메틸 (HS code: 2917.37-0000)	6.5	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HS code: 2905.31-0000)	5.5	발효 1년 : 4.4 발효 2년 : 3.3 발효 3년 : 2.2 발효 4년 : 1.1 발효 5년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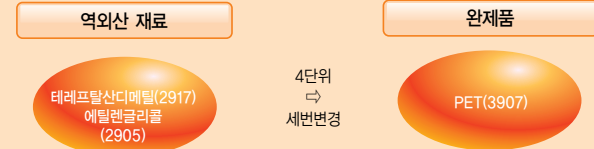
● PET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PET (3907.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중량의 50%이상인것에 한한다.
테레프탈산 (2917.36-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테레프탈산디메틸 (2917.37-0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에틸렌글리콜 (에탄디올) (2905.31-0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 PET(3907.60)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중량의 50%이상 사용되어야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테레프탈산(2917.36), 테레프탈산디메틸 (2917.37-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1-0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04.

고무제품 산업

제1장 고무제품 산업 개요
제2장 타이어 FTA 활용 Tip



4 고무제품 산업

고무제품 산업 개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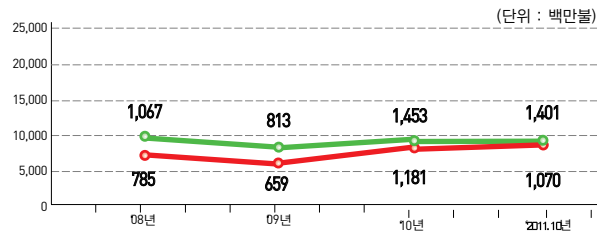
고무제품 산업은 천연 및 합성고무 등을 이용하여 고무제 의류, 관, 파이프, 위생용품(장갑) 및 150여종의 원재료가 투입되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섬유 및 화학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對美 전체 수출 규모 * 中 2.9%(1,453백만불, 2010년)

對美 수출(금액) : ('09) 37,649백만불, ('10) 49,816백만불

對美 수출 동향

< 최근 3년간 수출 >



< 주요 수출품목의 한-미 FTA 효과 >

(단위 : 백만불)

품명	수출금액 (2010)	실행세율 (%)	협정세율 (%)	철폐시기	FTA효과 (연간)
타이어	1,181	4~8.8	0	5년	9

※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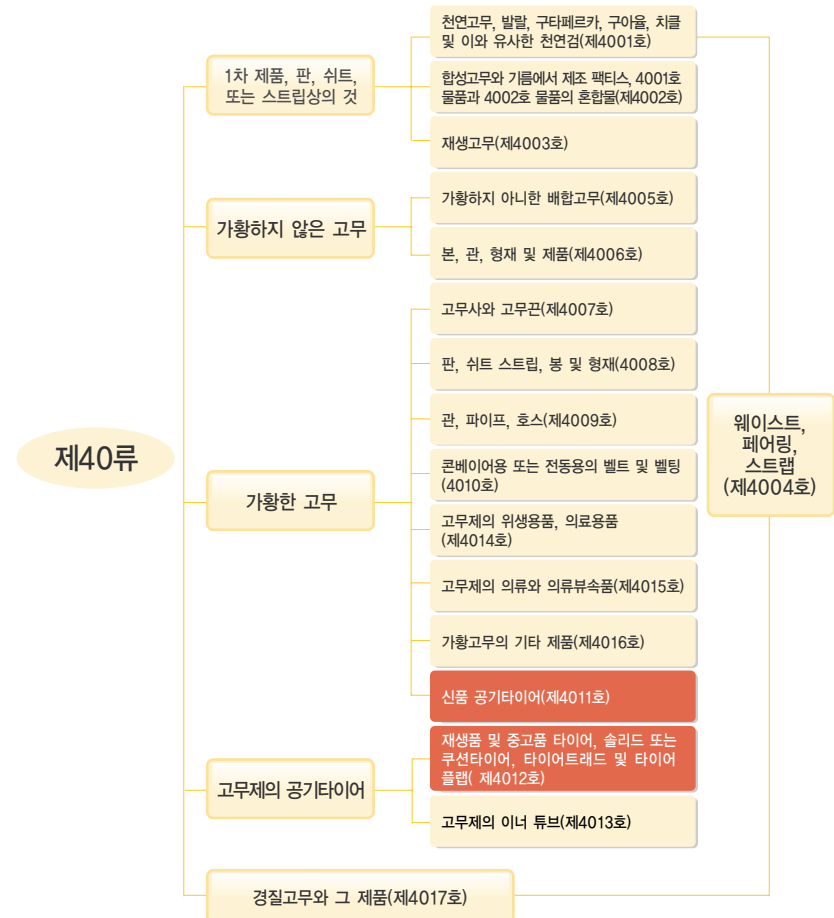
- 고무제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타이어 생산은 주원료로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을 사용하고 있으며, 승용차용 타이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 中 수출실적 30위권에 속하는 주력 수출품임
- 타이어(4%) 수출 시 발효후 5년 균등 철폐로 규정되어 있지만, 수출규모로 볼 때 절감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타이어 FTA 활용 Tip

타이어의 품목분류

타이어는 HS 40류의 4011호 및 4012호에 해당

4011호에는 신제품 타이어, 4012호에는 재생 및 중고품 타이어가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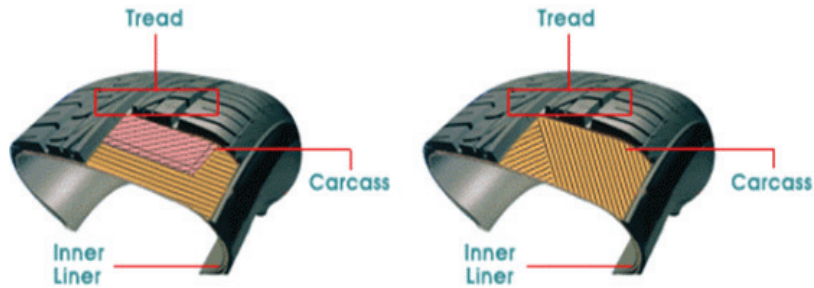




● **타이어 구조**

타이어 내부의 보디플라이 또는 카카스의 구조에 따라 크게 래디얼 타이어(Radial tire), 바이어스 타이어(Bias tire)로 구분.

〈그림 16 타이어의 분류〉



〈자승용차용 타이어의 품목분류구조〉

HS code		품명 (Description)
4011	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
		1000 래디얼구조의 것
		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9000 기타

〈 버스 및 화물차 타이어의 품목분류구조 〉

HS code		품명 (Description)
4011	20	버사용 및 화물차용의 것
		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1090 기타
		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2090 기타
		9000 기타

●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및 품목번호**

구 분	원재료	HS	
주원료	고무	천연고무	4001.10-0000
		합성고무(SBR)	4002.11-0000 4002.19-0000
	고무배합약품	카본블랙(착색 등)	2803.00-9010
		프로세스 오일	2710.19-7510
고무 노화방지제		-	
	유황	-	
보강재	강력사 타이어코드 원사	아라미드의 것	5402.11-0000
		나이론의 것	5402.19-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2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5902.10-0000
	강력사 타이어 코드직물	나이론 또는 폴리아미드제의 것	5403.10-000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5902.20-0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5902.90-0000
	스틸 코드	스테인레스강의 선 (황동 도금)	7223.00-0000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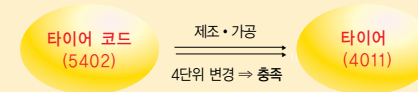
품 명	MFN	협정세율
승용차용 타이어 (HS code: 4011.10호)	<4011.1010> 4	2010 : 3.2 2011 : 2.4 2012 : 1.6 2013 : 0.8 2014 : 0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HS code: 4011.20호)	<4011.2010> 4	2010 : 3.2 2011 : 2.4 2012 : 1.6 2013 : 0.8 2014 : 0
합성고무 (4002.11-0000)	<4002.1100> 0	무관세 지속
합성고무 (4002.19-0000)	<4002.1900> 0	무관세 지속
카본블랙 (2803.00-9010)	<2803.0000> 0	무관세 지속
강력사타이어코드 아라미드의 것 (5402.11-0000) 나ylon의 것 (5402.19-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2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5403.10-0000)	<5402.1030> 8.8	즉시철폐
강력사 타이어코드 직물 나ylon 또는 폴리아미드제의 것 (5902.1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902.20-0000)	<5902.1000> 5.8	2010 : 5.2 2011 : 4.6 2012 : 4.1 2013 : 3.5 2014 : 2.9 2015 : 2.3 2016 : 1.7 2017 : 1.2 2018 : 0.6 2019 : 0

● 타이어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타이어는 승용차용 (4011.10호) 버스 및 화물차용 (4011.2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합성고무 (4002.11-0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호 내지 제4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합성고무 (4002.19-0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호 내지 제4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카본블랙 (2803.00-9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호 내지 제2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강력사타이어코드 아라미드의 것 (5402.11-0000) 나ylon의 것 (5402.19-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2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5403.10-00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5203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 된 것
강력사 타이어코드 직물 나ylon 또는 폴리아미드제의 것 (5902.1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902.20-0000)	다른 호에서 제5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또는 제53.06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 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 승용차용(4011.10), 버스 및 화물차용(4011.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으로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하는 카본블랙(2803), 강력사타이어
코드 등(5402) 등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

한-미 FTA 타이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한-미 FTA 타이어(4011) 원산지 결정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타이어(4011) 원재료 구성내역

구 분	품 목	품목번호	원산지구분	세번변경여부
재료 구성 내역	천연고무	4001.10.0000	역외산	변경
	합성고무	4002.11.0000	역내산	
	카본블랙	2803.00.9010	역외산	변경
	프로세스 오일	2710.19.7510	역내산	
	타이어 코드사	5402.11.0000	역외산	변경
	타이어 코드직물	5902.10.0000	역내산	
	스틸코드	7223.00.0000	역외산	변경

해설

- 원산지기준으로 '다른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을 두고 있음
 - 원산지결정을 위해 우선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세번을 파악한 후, 타이어 제조로 인해 4단위의 세번이 변경되는가를 판단해야함
 -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단과정
 - 원재료의 세번 확인 → 완제품의 세번 확인
 - *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는 검토 不要
- ⇒ 사용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천연고무, 카본블랙, 타이어코드사, 스틸 코드의 세번이 완제품(타이어)의 세번(4011)과 4단위가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요건 충족

05.

섬유산업

- 제1장 섬유·의류 산업 개요
- 제2장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 특징
- 제3장 면직물 FTA 활용 Tip

I 섬유 · 의류 산업 개요

섬유 · 의류 산업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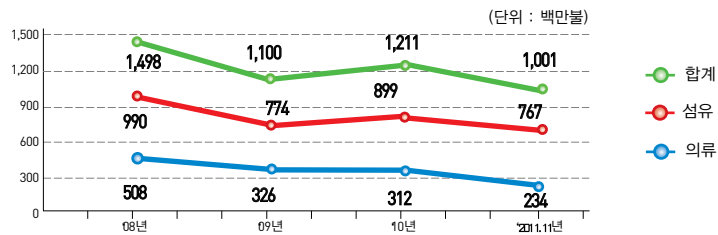
섬유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우리나라 주요 고용산업으로 생산, 고용, 업체수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산업

— 對美 전체 수출 규모 * 中 2.4%(1,211백만불, 2010년)

對美 수출(금액) : ('09) 37,649백만불, ('10) 49,816백만불

◎ 對美 수출 동향

〈 최근 3년간 수출 동향 〉



〈 주요 수출품목 한·미 FTA 효과 〉

품명	수출금액 (2010)	실행세율	협정세율 (%)	철폐시기	FTA효과 (연간)
섬유 · 의류	1,211	13.1	0	즉시 / 5년	159

※ 섬유분야 평균 실행세율 : 13.1%

※ 특이사항

-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 :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가,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평균 4,846억원의 생산증대 효과 예상 (출처 : 섬유협회 산업연구원 분석자료)

* 한미 FTA를 계기로 신규투자, 고부가가치 섬유개발, 브랜드력 향상 등으로 신규인력 및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한미 FTA 섬유 · 의류 분야 특징

가. 섬유 의류 제품을 별도 협정문으로 구성

다른 FTA의 경우 양허스케줄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다른 물품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섬유 · 의류 분야를 별도 장(제4장)을 마련

— 섬유 · 의류 관련규정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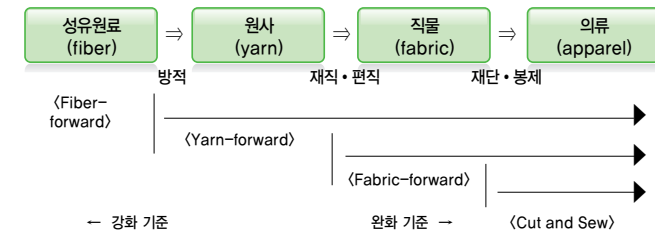
*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

*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나. 원산지기준(Yarn-forward) 원산지 결정기준

국산 원사 사용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기준(Yarn-forward)*원칙으로 하되, 특히 수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당 수준 예외 확보

— 협정 당사국의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 · 봉제 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



(원산지기준 예외 물량 확보) 원산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리넨직물, 합성 여성재킷 및 합성 남성셔츠 등 33개 품목 예외국산 원사 사용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기준(Yarn-forward)*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확보

다. 역내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허용

- 특정품목(부록4-나-1)의 수입산 물품으로 제50류~제60류 사이의 상품을 만든 경우 및 “특정품목(부록4-나-1)”과 “원산지 기준에 해당된 섬유 또는 사”를 혼합하여 만든 제50류~제60류 사이의 상품을 만든 경우 5년간,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만큼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 특정품목(부록4-나-1)의 수입산 물품으로 제61류, 제62류 사이의 상품을 만든 경우 및 “특정품목(부록4-나-1)”과 “원산지 기준에 해당된 섬유 또는 사”를 혼합하여 만든 제50류~제60류 사이의 상품을 만든 경우 5년간,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만큼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 관련규정 : 한미FTA 협정문 제6장 섬유·의류 부속서 4-나 제5조, 6조

라. 연례기업 정보

-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대미수출품 생산 관련기업에 한하여 연례적으로 제공
- * 소유·경영진명단, 근로자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등
- 미국바이어와 직거래 하지 않는 중소기업(종업원수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에서 제외

마. 간접 원산지 검증

- 한미FTA의 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이나,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상대국 세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간접조사방식임
- * 간접 검증시 수입국 세관의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회신
- 원산지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당사국은 해당 품목 또는 검증 대상 기업이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를 배제할 수 있음

섬유·의류 FTA 활용 Tip

◎ 섬유·의류 품목분류

섬유는 제50류 부터 60류까지 해당되고, 의류는 61류, 62류로 분류됨

〈섬유·의류 품목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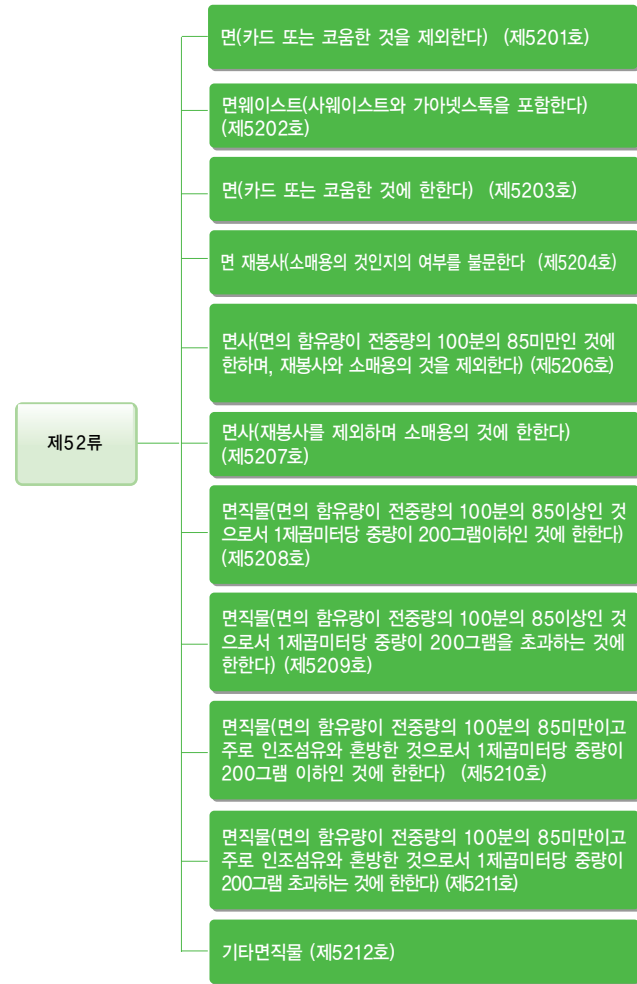
품목번호	품명	
가방류	제4202.12호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제4202.22호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제4202.32호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제4202.92호	기타 가방류 -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섬유·사·직물	제50류	견
	제51류	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제54류	인조 필라멘트
제55류	인조 스테이플	
부직포, 양탄자, 특수 직물등	제56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드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편물	제59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품목번호		품명
의류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제62류	의류 및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기타 섬유 제품	제63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된 기타 상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유리
유리	제7019호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 · 직물)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유리
잡품	제9404.90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 :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우프 · 베개)

◎ 섬유 · 의류 제품 품목분류 체계

원료	→	섬유(fiber)	→	사(yarn)	→	직물(fabric)	→	의류
누에고치	→	5001~5003	→	5004~5006	→	5007		의류 (62류)
모(Wool)	→	5101~5105	→	5106~5110	→	5111~5113		
면(Cotton)	→	5201~5203	→	5204~5207	→	5209~5212	→	
기타식물성재료	→	5301 5305	→	5306~5308	→	5309~5311		
고분자중합체	→	→ → →	→	5401~5406	→	5407~5408		
고분자중합체	→	5501~5507	→	5508~5511	→	5512~5516		

◎ 면의 품목분류



◎ 면의 주요 원재료 및 품목번호

(1) 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제5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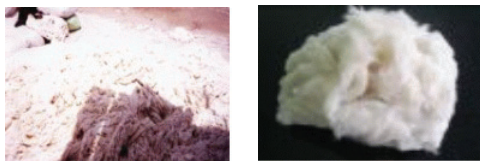
〈 면화의 생성과정 〉



- 면실은 면화나무(Gossypium)에 달려있는 면화송이(pods, fruit)에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면섬유로 둘러싸여 있음
- 면섬유의 본질적인 조성은 셀룰로스이며 왁스질로 덮여 있으며, 면섬유의 외부 표면은 부드럽고 그 본래의 색은 백색, 담황색 또는 균일한 담갈색이나 담적색
- 면은 성숙된 면화송이가 다소 넓게 벌어졌을 때 수확되고, 면화송이의 깎지까지 따는 것이 아니고 보통 면만을 채취하며 면실을 이 후 조면에 의하여 제거된다.

(2) 면웨이트(사웨이트와 가아넷스톡 포함) : 제5202호

〈 면웨이트 및 코우머 노일 〉



- 일반적으로 제5202호에는 면의 방적준비 또는 제직·편직등의 작업 중에서 얻어진 면웨이트가 분류되며 또한 면제품을 가아넷하여 얻은 것도 분류

(3)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함) : 제5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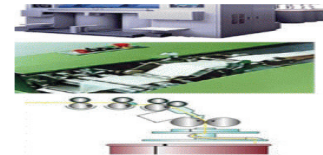
〈 가공공정별 원면의 종류 〉

소면 (Carding)



섬유 뭉치를 풀어헤쳐 섬유를 한 올씩 분리하여 섬유 사이에 들어있는 잡물과 단섬유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긴 섬유를 연신하고 평행하게 접촉하여 빗줄 모양의 Silver로 만들어 캔(Can)에 담는 공정
반제품 : 소면 슬라이버

연조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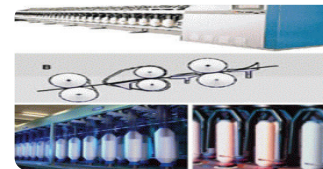
6~8 가닥의 Silver를 Doubling 하고 연신하는 작용을 2~3회 반복하여 섬유를 똑바로 늘려 퍼짐과 동시에 길이 방향의 결점을 없애는 공정
반제품 : 연조 슬라이버

정소면 (Combing)



섬유를 직선상으로 펴고 평행하게 간추리는 것과 동시에 일정길이 이하의 섬유를 제거하여 섬유장의 분포상태를 좋게하고 소면 Silver에 잔류한 뭉친 섬유와 잡물을 제거하여 균일하고 강력이 큰 실을 방출할 수 있는 Silver를 만드는 공정
[참빛의 원리]
-반제품 : 정소면 슬라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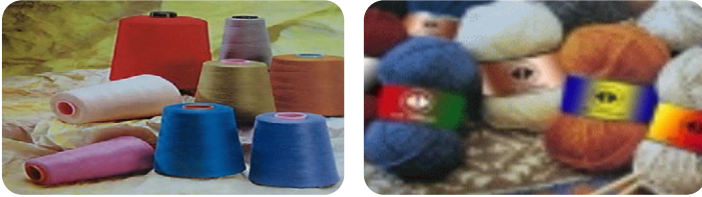
조방 (Roving)



연조 Silver를 더욱 가늘게 하여 정방기에서의 부담을 덜어주어 균일한 원사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방 준비 공정. 조방에서는 Silver 보다 훨씬 가는 상태의 조사(Roving)의 형태로 만들어 지는데 취급 도중에 불규칙하게 연신되거나 절단 되지 않도록 약간의 꼬임을 주는 공정
반제품 : 조사(ro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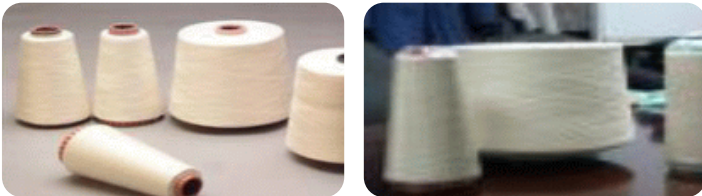
(4) 면 재봉사(소매용 불문) : 제5204호

〈 면재 재봉사 〉



(5) 면사: 제5205호 ~ 제5206호

〈 면사 : 제5205호 ~ 제5206호 〉



○ 제5203호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사를 분류한다.

(6) 면사(소매용의 것) : 제5207호

〈 면사(소매용의 것) : 제5207호 〉



(7) 면직물 : 제5208호~제5212호

미표백면직물

미표백 직물
(Unbleached)



표백면직물(백색포함)

미표백 직물
(Unbleac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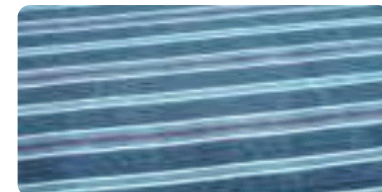
염색면직물

미표백 직물
(Unbleached)



상이색사면직물

미표백 직물
(Unbleached)



날염면직물

날염직물
(Printed)



◎ 미국 수입관세율 및 협정세율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112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5년 균등철폐
5208114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9	5년 균등철폐
5208118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으로서, 타이프라이터 리본용에 한한다)	무관세	무관세 지속
5208118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5	5년 균등철폐
5208124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5년 균등철폐
5208126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9	5년 균등철폐
5208128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5	5년 균등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1300	표백하지 아니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 면직물(파사 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7.9	5년 균등철폐
52081920	표백하지 아니한 사틴 또는 능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9	5년 균등철폐
52081940	표백하지 아니한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즉시철폐
52081960	표백하지 아니한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9	즉시철폐
52081980	표백하지 아니한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5	즉시철폐
5208212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8.4	5년 균등철폐
5208214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10.2	5년 균등철폐
5208216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5	5년 균등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224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8.4	5년 균등철폐
5208226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8.7	5년 균등철폐
52082280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평직의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표백한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5	5년 균등철폐
52082300	표백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9.1	5년 균등철폐
52082920	표백한 사틴 또는 능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7	5년 균등철폐
52082940	표백한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8.4	즉시철폐
52082960	표백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10.2	즉시철폐
52082980	표백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3.5	즉시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3120	염색한 평직 면직물(인증된 수직기로 짠 직물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즉시철폐
52083140	염색한 평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1	5년 균등철폐
52083160	염색한 평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7	5년 균등철폐
52083180	염색한 평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2.5	5년 균등철폐
52083210	염색한 평직 면직물(인증된 수직기로 짠 직물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5	즉시철폐
52083230	염색한 평직 면직물(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5년 균등철폐
52083240	염색한 평직 면직물(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9.7	5년 균등철폐
52083250	염색한 평직 면직물(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2.5	5년 균등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3300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 면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3	5년 균등철폐
52083920	염색한 사틴 또는 능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8	5년 균등철폐
52083940	염색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즉시철폐
52083960	염색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9.7	즉시철폐
52083980	염색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2.5	즉시철폐
52084120	평직 면직물(인증된 수직기로 짠 직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3	즉시철폐
52084140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평균 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8.1	즉시철폐
52084160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평균 밀도수 43번-68번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11.4	즉시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4180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14.7	즉시철폐
52084210	평직 면직물(인증된 수직기로 짠 직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3	즉시철폐
52084230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8.1	5년 균등철폐
52084240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11.4	즉시철폐
52084250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14.7	즉시철폐
52084300	3올 또는 4올의 능직 면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무관세	무관세 지속
52084920	사틴 또는 능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무관세	무관세 지속
52084940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 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8.1	즉시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4960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9.7	즉시철폐
52084980	기타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에 한한다)	14.7	즉시철폐
52085120	날염한 평직 면직물(인증된 수직기로 짠 직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즉시철폐
52085140	날염한 평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8.1	5년 균등철폐
52085160	날염한 평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12.5	5년 균등철폐
52085180	날염한 평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5년 균등철폐
52085210	날염한 평직 면직물(인증된 수직기로 짠 직물로서,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즉시철폐
52085230	날염한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5년 균등철폐

HTS	품 명	MFN	양허유형
52085240	날염한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11.4	5년 균등철폐
52085250	날염한 평직 면직물(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2.5	5년 균등철폐
52085300	날염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 면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8.8	5년 균등철폐
52085920	날염한 사틴 또는 능직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3	5년 균등철폐
52085940	날염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2번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5년 균등철폐
52085960	날염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43번-68번인 것에 한한다)	9.7	5년 균등철폐
52085980	날염한 기타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평균밀도수 69번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4	5년 균등철폐

*2007. 6월 서명본 자료임, 미국측 양허세율 및 유형은 FTA포탈 참고

● 면직물(제5208호~제5212호) 원산지 결정기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① 기본 규정 : 면직물을 제외한 다른 호(4단위)에 해당되는 비원산지(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국내산)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기본 규정 중 예외 규정(이 상품군 이외의..)의미

- 면직물은 미표백, 표백, 염색, 날염으로 가공할 수 있다. 즉, 미표백 면직물(제 5208.11호, 중량 200g/m²이하)을 재료로 사용하여 염색한 경우 염색한 면직물(제5208.31호(중량 200g/m²이하) 및 제5209.31호(중량 200g/m²초과)로 세번 변동이 발생된다.
- 기본 규정상 호단위(4단위) 변동으로 제5208호 재료로 부터 제5209호 제품을 생산한 것에 해당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기본 규정 중 예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즉, 기본 규정의 예외 규정은 염색, 날염 등의 가공은 원산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예) 인도산 원면을 수입하여 면사로 방직한 후 100%면제 분홍색 염색 평직물(중량 180g/m²)로 제작하여 미국으로 수출

→ 제품 면직물은 ①면이 85%이상으로 중량 200g/m²이며(제5208호), ②염색한 것으로(제5208.3호), ③평직물(제5208.32호)이므로 제5208.32호에 분류됨사용 재료 원면은 제5201호에 분류 되므로, 다른 호(제5201호)이고 제5208~제52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①-1 기본 규정 중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예2) 중국산 미표백 100%면제 평직물(중량 199g/m²)을 수입하여 분홍색 염색 면직물(중량 201g/m²)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

→ 제품 염색 면직물은 제5209.31호에 분류되며, 사용된 재료 중 직물은 제5208호에 분류되고, 염색제는 제32류에 분류되므로 다른 호(4단위)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산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만, 기본 규정 중 예외 규정에 “이 상품군 외의 호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료 제5208호의 경우 비원산지(중국산)로 염색한 경우 원산지 인정받을 수 없음

② 예외 규정 : 주로 면과 다른 류의 섬유가 혼방된 경우에 있어 원산지 재료(국내산)로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규정임

〈 면직물 원산지 규정의 예외규정 〉

세 번 [HS2002]		품 명
제51류 양모	제5106호~ 제5110호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및 마모사
제52류 면	제5205호~ 제5206호	면사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제5401호	인조필라멘트 재봉사
	제5402호	합성필라멘트사
	제5403.20호	텍스춰드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제5403.33호 제5403.39호	비스코스레이온 이외의 단사
	제5403.42호 제5403.49호	비스코스레이온 이외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제5404호	합성 모노필라멘트(6대시텍스이상의 것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이하 인 것에 한함) 및 방직용 합성섬유 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시폭 5mm 이하의 것에 한함)
제55류 인조스테이플	제5509호	합성 스테이플사
	제5510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사

③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의 종류(비원산지 가능)

〈 면직물 원산지 규정의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 〉

세 번		품 명
제50류 견	제5004호 제5005호	견사, 견방사
제53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제5306호	아마사
	제5307호	황마사
	제5308호	대마사 등 기타 식물성 섬유사

③-1 미국산 면사에 상기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사로 직물을 제조하였을 경우

예3) 인도산 면사를 수입한 것 90%,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제 합성스테이플사 10%로 직조한 청색 염색된 평직물(중량 205g/m²)

→ 제품 면직물은 ①면이 90%이상으로 중량 205g/m²이고(제5209호), ②염색한 것으로(제5209.3호), ③평직물(제5209.31호)이므로 제 5209.31호에 분류사용 재료 면사는 제5203호에 분류되고, 폴리에테르제 합성스테이플사는 제5509호에 분류면사 및 합성스테이플 모두 다른 호(4단위)에 분류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원산지 인정받지 못함

예1-1)* 인도산 원면(제5203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직한 면사를 구입하여 100%면제 분홍색 염색 평직물(중량 180g/m²)로 제작하여 미국으로 수출

→ 제품 면직물은 ①면이 85%이상으로 중량 200g/m²이하(제 5208호), ②염색한 것으로(제5208.3호), ③평직물(제5208.32호)이므로 제5208.32호에 분류

[①] 사용 재료 면사는 제5206호에 분류되며, "인도산 원면으로 방직한 면사"는 면사(제5206호)의 원산지 규정2)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임

면사가 다른 호(제5206호)이고 제5208~제52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제5206호 원산지규정 중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원산지 인정받지 못함

[②]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누적조항 중 공정누적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가공한 업체가 인도산 원면을 수입하여 면직물로 가공한 것으로 간주하면 원면은 다른 호(제5203호)이고 제5208~제52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외규정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 인정받게 됨

각주* : 5201-5207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또는 제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2 미국산 원면에 상기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섬유(또는 필라멘트)로사를 제조하였을 경우

예4) 미국산 면사를 수입한 것 90%, 중국산 아마사 10%로 직조한 청색 염색된 평직물(중량 205g/m²)

→ 제품 면직물은 ①면이 90%이상으로 중량 205g/m²이하(제5209호), ②염색한 것으로(제5209.3호), ③평직물(제5209.31호)이므로 제 5209.31호에 분류 / 사용 재료 면사는 제5203호에 분류되고, 아마사는 제5306호에 분류 / 면사의 경우 미국산이므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며, 아마사는 예외규정에 없으며, 다른 호(4단위)에 분류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④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혼방되는 다른 류의 섬유 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예5) 미국산 면사를 수입한 것 95%,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제 합성스테인리스 5%로 직조한 청색 염색된 평직물(중량 205g/m²)

→ 제품 면직물은 ①면이 85%이상으로 중량 205g/m²이하(제5209호), ②염색한 것으로(제5209.3호), ③평직물(제5209.31호)이므로 제 5209.31호에 분류 사용 재료 면사는 제5203호에 분류되고, 폴리에테르제 합성스테인리스는 제5509호에 분류 / 면사 및 합성스테인리스 모두 다른 호(4단위)에 분류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함량이 7%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허용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즉, 상기 물품은 원산지 인정되는 물품임

[②]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누적조항 중 공정누적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가공한 업체가 인도산 원면을 수입하여 면직물로 가공한 것으로 간주하면 원면은 다른 호(제5203호)이고 제5208~제52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 인정 받게 됨